㉾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팀장 손용석 [6571]/ 팀원 문성현 [6587]/E-mail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3837호

시행일자 2019. 2. 12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암학회장

참 조

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

1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31호(2019.2.12.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의료정보-의약품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 ‘란에도 게재함

[주요개정내역]

<신설>

- 식도암에 ‘capecitabine + cisplatin + CCRT’ 요법 (선행화학요법)
- 췌장암에 ‘capecitabine + CCRT’ 요법 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
- 자궁암에 ‘paclitaxel + carboplatin’ 요법 (수술후보조요법)

<변경>

- 전립선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‘enzalutamide’ 단독요법

<삭제>

- 연조직육종에 ‘olaratumab + doxorubicin’ 병용요법

○ 시행일 : 2019년 2월 13일

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